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7.07.31.)

하나 UBS 코리아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펀드코드 : AP771]

투자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하나UBS 코리아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집합투자기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편입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세민과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종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전환형		
집합투자업자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02-3771-78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1좌단위 모집)
효력발생일	2017년 09월 01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C C-E		
가입자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가입대상자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판매수수료(선취)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보수 (연, %)	운용	0.3500%	0.3500%
	판매	0.5500%	0.2750%
	신탁업자	0.0300%	0.0300%
	일반사무	0.0150%	0.0150%
	기타비용	0.0020%	0.0020%



	총보수 비용	0.9470%	0.6720%
※ 주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 운용,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 보수는 3개월 후금, 기타보수는 사유발생시 지급합니다. 수익자는 증권 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시 30분 이전 : 제2영업일 15시 30분 경과 후 : 제3영업일 	판매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시 30분 이전 : 제2영업일 기준가 제4영업일 지급 15시 30분 경과 후 : 제3영업일 기준가 제4영업일 지급
기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편입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서민과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50% 이상
하나UBS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채권]	50% 이하



유동성 자산	10% 이하
--------	--------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어음	40% 이하
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채권	60% 이상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어음	40% 이하
하나 UBS 파워증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채권]	채권	60% 이상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어음	40% 이하

(3) 비교지수(Benchmark) : (KOSPI*50%) +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50%)

※ 이 비교지수는 2017년 4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주식혼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해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국내주식 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며, 50%이하를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50% 이상
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50% 이하
하나 UBS 파워증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채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투자대상	투자전략
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하나UBS인Best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UBS파워증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 [채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등 우량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효율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시장위험 관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위험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김정표	1977	부장	41 개	3,119 억원	- 서울대 기술정책대학원 박사수료 - 주식 애널리스트 5년 - (현)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주식운용본부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신봉관	1970	실장	3 개	3,690 억	- 충남대학교 경영학 석사 - 동양자산운용 채권운용팀 - KDB 자산운용 Credit 투자팀 - 삼성자산운용 FI 운용팀 - (현)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채권운용1팀

주1)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기준일 현재 동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16/03/17~ 2017/03/16	2015/03/17~ 2016/03/16	2014/03/17~ 2015/03/16	2013/03/17~ 2014/03/16	2012/03/17~ 2013/03/16
하나UBS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2014-03-17	4.71	-0.89	2.34		
비교지수	2014-03-17	4.96	1.81	5.49		
하나UBS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Class C	2014-03-17	4.67	-0.92	2.32		
하나UBS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Class C-E	2014-05-02	4.96	-0.64			

주1) 비교지수 : (KOSPI*50%) +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50%)

이 비교지수는 2017년 4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최초설정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KOSPI * 50%) + (매경BP종합채권지수 * 50%), 2017년 2월 9일부터 2017년 4월 17일까지 (KOSPI*50%) + (매경BP종합채권지수(A-이상)*5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종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을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7.17%**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이 위험등급분류는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으로 판매회사의 위험분류 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추구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추구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1) 수익자에 대한 과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가입자격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p>로 한정한다)</p> <p>*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p> <p>** 매년 6.30.이전에 가입 시에는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가입 가능함</p>
가입기간	2015.12.31.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저축계약기간	10년 이상 * 단 5년 이내 해지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
가입한도	연간 6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함)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다만,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 별도부과. 또한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과세에 대한 세부내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이 투자신탁은 법232조에 의거한 전환형 투자신탁으로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음의 투자신탁 중 하나의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수(이하 "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환이 불가능하고 전부전환만 가능하며, 전환수수료나 전환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전환가능 집합투자기구 >

하나UBS 인덱스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 코리아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 코리아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전환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재무정보

요약재무정보는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중 1. 재무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ubs-hana.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ubs-hana.com)

